

연구위원 신규채용 심사절차 및 기준

1. (1단계) 서류 심사

- (심사대상) 지원 서류 접수자 전원
- (심사내용) 적합 여부만 결정
 - 학·경력에 따른 자격 유무
 - ※ 외국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외국학교 인증 참고자료로 대조심사
 - 대학 및 대학원 전공과 모집분야와의 적합 여부
 - 구비서류 충족 여부 등(구비서류 및 경력환산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)
- (심사결정)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 결정
 - ※ 심사위원 3명이 심사항목 전부에 대하여 “적합” 또는 “충족”으로 판정하여야 합격

2. (2단계) 연구실적물 심사

- (심사대상)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
- (심사내용) 연구실적물 각 편에 대하여 모집 전공분야와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, 연구실적물 내용을 평가하여 등급 및 점수 부여

<연구실적물의 내용평가 등급 및 점수>

수	우	미	양	가
90~100점	80~90점 미만	70~80점 미만	60~70점 미만	60점 미만

- (심사결정) 아래의 내용 모두를 충족해야 합격 처리

▶ 해당 전공분야의 적합	⇒	각 편에 대하여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“적합”으로 판정한 경우
▶ 연구실적물 내용 평가	⇒	각 편에 대하여 3분의 2 이상의 심사위원 점수가 “우(80점)” 이상인 경우

※ 서류심사 및 연구실적물심사 탈락자의 연구실적물은 2024.10.1. 이후 폐기

3. (3단계) 면접 심사

- (심사대상) 연구실적물 심사 합격자 중 모집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함. 다만 3배수가 안될 경우에는 연구실적물 심사합격자 전원으로 함.
- (심사방법) 각 평가요소에 대해 A·B·C 등급으로 평가

▶ 면접 시험 심사요소: 5개 항목

- ①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
-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
-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-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-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
▶ 면접 심사 요소를 등급별로 점수화하고, C등급 평가 시 구체적인 사유 기술

◆ A등급(상) :	A ⁺ : 100	A ⁰ : 96	A ⁻ : 92
◆ B등급(중) :	B ⁺ : 88	B ⁰ : 84	B⁻ : 80
◆ C등급(하) :	C ⁺ : 76	C ⁰ : 72	C ⁻ : 68

○ (심사결정)

- ▶ 각 평가요소별로 심사위원의 평균 등급이 B⁻(80점)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함
- ▶ 각 평가요소 중 어느 한 요소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C⁺(76점) 이하로 평가할 경우 불합격